



2022 탁틴내일 이슈리포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시보기

네번째 이야기



사건개요

피고인(44세, 남성)이 만취한 피해자(18세, 여성)에게
“위험하니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
등으로 피어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 성폭행한 혐의

- ✓ 피해자는 간음(성폭행) 주장, 피고인은 특정 신체 접촉 후 피해자의 거부로 중단했음 주장
- ✓ 간음약취(형법 제 288조 제1항), 준강간(형법 제299조) 혐의로 기소

✓ 1, 2심 무죄 선고

“

무죄판결 이유

”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직접 증거는 만났을 때부터 모텔 나오기 전까지의 부분 기억뿐”

**즉,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판결!!**

*심신상실: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심신상실 상태다 vs 아니다 판단 가능한가요?

- 📌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 📌 피해자가 비교적 또렷하게 “X나 즐려”라고 말을 했다
- 📌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8차례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거나 걸음로 보기에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면 준강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선바꾸기 하나,

**피고인 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모텔에 데려갔을 뿐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지 않았다”**

44세 성인 남성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왜!!
“탑승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며 ‘모텔’로 데려갔을까요?

모텔로 데려가기만 했을 뿐인데 왜 특정 신체 접촉을 했을까요?
왜 ‘옷도 벗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만 했을까요?

만약 피해자가 거부 의사도 표현 못할 상태였다면
신체 접촉으로 끝났을까요?

처음보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고
피고인이 도중에 신체 접촉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이 있었던게 아닐까요?

시선바꾸기 돌,

성폭행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특수 상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수많은 성범죄, 성폭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가
혼자 걷고 의식이 있어 보인다고
성폭행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행동, 태도가 아니라

성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자가 술을 마시고 다니니까 그렇지' '모텔에 가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통념

1. 술에 취한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으면,
이후 편견, 통념, 2차 피해까지 모두 피해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술 마신 여성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2. '모텔에 간다=성관계 동의' 절대 아닙니다!!
성관계의 동의여부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Yes', 'No'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대전지법 형사 11부(김용찬 부장판사) 판결

- '만취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 잘못된 통념때문에 억울함과 다툼 발생'

같은 사건, 다른 결과1

필리핀에서 일어났다면?

필리핀 법 7610조(7610)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법에 따라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아동과 발견되는 성인을 처벌할 수 있다

- 성인이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
 - > 인신매매로 판단(팔레르모 의정서*)
 - > 필리핀 법 9208조 인신매매방지법(2003)에 위반
- 가해자가 신체 접촉 후 그만두었다?
 - > 강간미수로 처벌 가능

팔레르모 의정서*: 2000년 이탈리아 남부 팔레르모에서 159개국에 의해 채택된 UN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 부속 의정서

출처: ECPAT Philippines

같은 사건, 다른 결과 2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면?

성인이, 특히 알코올을 이용하여 아동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동보호법에 위반됨

- 음주로 인해 아동의 의식(consiousness)과 힘(power) 부분 상실하게 함.
:의식을 전부 잃지 않더라도 알코올로 인해 약해진 것을 고려해야 함.

출처:ECPAT Indonesia

여러분이 길에서 울고 있는 만취한 청소년을 만난다면?

‘모텔’로 데려가시겠습니까?

‘112 신고’ 또는 청소년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귀가를 지켜주는
진정한 어른으로서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세요.